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(김혜련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0월 17일

발 의 자 : 김혜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박순규, 이광성, 한기영,
이동현, 송아량, 오현정,
김경우, 이영실, 김화숙,
오한아, 유 용, 김제리,
유정희, 이은주, 김정태,
문장길, 김동식, 서윤기,
경만선, 황규복, 김상진,
이광호, 우형찬, 박기열,
이상훈, 노식래, 장상기,
김정환, 장인홍, 권영희,
봉양순, 이병도, 이태성,
김용연, 노승재, 추승우,
최기찬, 황인구 의원(38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사회서비스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질 관리의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

-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 마련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·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, 품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,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(안 제1조)
- 나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(안 제2조)
- 다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토록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운영 및 재산,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마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규정함(안 제7·8조)
- 바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검사·감독 근거를 규정함(안 제9·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.

나. 관계 법령 :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,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시 사회서비스원(이하 "사회서비스원"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설립) 사회서비스원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5조(사회서비스원의 사업) ①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
 2.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
 3.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·회계·법무·노무 등에 관한 상담·자문
 - 가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·설치 및 운영
 - 나.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
 4.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·개발
 5.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
 6.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,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
 7.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업
-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 등)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
3. 기부금
4. 그 밖에 수익금

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·대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검사·감독)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한 지도·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(설립), 제4조(사회서비스원 사업), 제5조(운영 등), 제6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제2항“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”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용

나.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용은 전액 시비 부담을 전제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용은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출연금, 시설비, 자산및물품취득비, 기타자본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산출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기부금 등 세입은 수익사업이 정해져있지 않고 기부금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- 인건비 상승률 3.2% 적용

다. 추계기간 : 5년

라. 방법
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용에 따른 운영체계, 인력규모, '19 예산 등은 소관부서 관련 자료('19년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산사업설명서. 첨부자료)를 준용

- 운영체계 : 1본부 4 산하기관
- 인력규모 : 212명(본부 20명, 산하기관 192명)
- '19 예산 : 9,254,914천원(설립비용 951,800천원 6개월 운영비용 8,303,114천원)
-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'19년 「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」 사업 예산사업설명서 -

- 비용추계 2차년도부터는 설립비용중 사무관리비(인력채용비용), 시설비,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외한 모든 비용요인은 1년분 반영하여 산출
- 비용추계 2차년도부터 모든 비용요인에 인건비 상승률 3.2% 적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= 53,748,733천원(연평균 10,749,747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서울특별시 사회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비용	9,254,914	10,603,540	10,942,853	11,293,025	11,654,401	53,748,733
	소계(b)	9,254,914	10,603,540	10,942,853	11,293,025	11,654,401	53,748,733
□ 총 비용(b-a)		9,254,914	10,603,540	10,942,853	11,293,025	11,654,401	53,748,733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시팀장 여차민

주무관 최경희

☎ 02-2180-7944

e-mail : hiru90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용(=53,748,733천원)

- 총 비용 = $\sum_{i=1}^5$ (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연간 운영비용)_i

-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연간운영비용 = 전년도 설립 및 운영비용 x 인건비 상승률 2차년도부터 적용(3.2%)

- 2019년 설립 및 운영비용 : 9,254,914천원(※세부내역 첨부자료 참고)

(단위 : 천원)

계	설립비용						운영비용
	소계	사무관리비	공공운영비	시설비	자산및물품취득비	기타자본이전	출연금
9,254,914	951,800	241,000	10,800	100,000	200,000	400,000	8,303,114
		본부 사무관리비 - 건물임대료 172,000 - 직원 30명 채용비용 60,000 - 청소비 9,000	본부 공과금 10,800(3개월분) (전화, 서버, 통신, 우편 등)	본부 내부 공사비용 100,000	컴퓨터, 책상 등 집기비품 구매 등 200,000	본부건물 임차보증금 400,000 (1년분)	- 본부운영 1,633,422 - 서비스개발 및 교육 454,736 - 전산시스템 구축 300,000 - 산하기관 설치및관리 2,265,150 - 기본재단 1,000,000 - 예비비 2,649,806

- 2020년 설립 및 운영비용 : 10,274,748천원

(사무관리비 1년분 + 공공운영비 1년분 + 기타자본이전 인상분 + 출연금 중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비용 1년분)

(단위 : 천원)

계	설립비용				운영비용
	소계	사무관리비	공공운영비	기타자본이전	출연금
10,274,748	679,800	216,600	43,200	420,000	9,594,948
		본부 사무관리비 - 전년도 건물임대료 5/100의 금액 한도 내 지원 180,600 = 172,000 * 1.05 - 청소비 36,000 전년도 청소비(3개월분 9,000) 1년분 적용 = (9,000천원/3개월)*12개월	본부공과금 43,200 전년도 공과금 3개월분 10,800원 1년분 적용 = (10,800천원/3개월)*12개월	본부건물 임차보증금 420,000(1년분)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관련 현 임대보증금의 5/100의 금액 한도 내 지원 = 400,000 * 1.05	- 본부운영 1,960,106 (전년도 1,633,422/10개월)*12개월 - 서비스개발 및 교육 454,736 - 산하기관 설치및관리 4,530,300 (전년도 2,265,150/6개월)*12개월 - 예비비 2,649,806

- 인건비 상승률 3.2% : 비용추계 2차년도부터 반영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계
계	9,254,914	10,603,540	10,942,853	11,293,025	11,654,401	53,748,733
설립비용	951,800	701,554	724,004	747,172	771,081	3,895,611
운영비용	8,303,114	9,901,986	10,218,850	10,545,853	10,883,320	49,853,122